[붙임 2]

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개요 및 신고 시스템 입력방법 안내

1. 고용평가 제도 개요

(1) **신청대상 :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(해당업체에 한함)**

※ '23년 실적 미신고 업체 신청 가능('24년 신규업체는 제외)

(2) 운영기간 : **2024. 4. 1(월)**부터 입력 가능

(3) 신청기간 : **2024. 4. 1(월) ~ 4. 15(월)**

(4) 평가일정 : 신청(매년 4.15까지) → 내검 및 평가 → 공시(6월 말)

(5) 제출서류(㉠+㉡)

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[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]

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(전년도, 전전년도)

(6) 고용평가 결과 우대

- 고용평가 결과 우수 건설사업자의 경우,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에 가산

고용평가단위	고용평가등급	등급배분기준	가산비율
전문건설사업체 전체	1등급	상위 30% 미만	6/100
	2등급	상위 30% 이상부터 상위 70% 미만	5/100
	3등급	상위 70% 이상	4/100

2. 통합실적관리시스템(고용평가) 입력 절차

(1)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의 담당자 관리(담당정보-고용평가) 입력 및 저장

(2)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및 근로자 복지증진제도 해당 사항 입력 및 저장

㉠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

㉡ 근로자 복지증진제도

- (가족친화인증) "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"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가족친화인증서
- (사내근로복지기금) "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"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시행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(선택적 복지제도) 전산관리서비스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한 내역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(현장 편의시설 설치)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감리자가 확인한 현장 목록, 현장별 설치 사진, 내역서 등

(3)「신고확정」→ '신고확정'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완료

(4) 고용평가 신청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협회로 제출